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323
----------	-------

발의연월일 : 2017. 11. 22.

발의자 : 황주홍·김철민·송기석

오세정·이찬열·김관영

김경진·윤영일·김종회

박준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 등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통합·간소화하려는 것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토지이용 인·허가 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공정성·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 위원에 대한 별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이에 토지이용 인·허가 조정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별칙 적용 시에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토지이용 인·허가 조정위원회 위원·전문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전문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u>제14조의2(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토지이용 인·허가 조정 위원회 위원·전문위원 중 공무 원이 아닌 위원이나 전문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 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 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u></p>